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장수포상금 지급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10.2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10월 1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7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10월 22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세무2과장 박영우

가. 제안이유

동 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근거 법령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,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근거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체납업무 직접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.
- (2) 안 제2조제2항에서는 특별한 징수노력이 수반되는 「특별한 공적」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,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징수사례 포상금 지급 제외함.
- (3) 안 제3조제7호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을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신설함.

(4) 안 제4조에서는 지방세 관련 외부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 공정성 제고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개선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-9740(2012. 5.15)와 관련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며,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인용 법률을 수정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, 입법예고 및 우리 구 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